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1280
----------	------

발의연월일 : 2024. 7. 2.

발 의 자 : 장경태 의원 등 170인

주 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엄희준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엄희준

직 위 : 검사

탄핵소추사유

피소추자는 검사인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피소추자는 2011년 당시 야당 인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증인 한만호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번복하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2011. 1. 27.부터 같은 해 3. 23. 사이에 한만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던 재소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한만호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 증언은 거짓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연습시켰고, 실제 이들 재소자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하였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정치적 중립에 반하여 불공정하게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여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불법성이 매우 큰바,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로 있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기인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한 바 있다.

피소추자는 2010. 7. 20. 당시 야당 정치인으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소속 검사로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6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 한만호가 2010. 12. 20.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번복하자 증인 한만호의 바뀐 증언을 거짓으로 몰고 그 신빙성을 탄핵하여 당시 피고인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2011. 1. 27.부터 같은 해 3. 23. 사이에 한만호와 같이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 한모씨를 21차례, 재소자 최모씨를 18차례, 출소해 있던 수감자 김모씨를 10차례 이상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이들에게 ‘한만호가 법정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 증언은 거짓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연습시켰고, 이들 중 최모씨는 2011. 3. 7.에, 김모씨는 같은 해 2. 21. 및 3. 22. 법정에서 각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및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이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는 제1항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특정 정치 세력을 편들어 그 정치 세력에 속한 정치인과 관련자들을 부당하게 유리하게 봐주기식으로 수사하여서도 아니 되고, 그와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하여는 무리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과도하게 수사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저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소추자가 이러한 헌법 및 법률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당시 야당 정치인인 한명숙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재

소자들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하는 불법을 저지른바, 이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부정적인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검사가 가진 수사권과 공소유지권을 남용하여 한명숙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피소추자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과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인권 보호 의무, 적법절차 준수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국가 형벌권 행사의 주체로서 수사권 및 공소제기·유지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검사라는 점에서 그 헌법상의 의무는 매우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검찰권 행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는 한도에서 신중하여야 하고, 검사는 특정 정치 세력을 편들어 그와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하여는 무리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저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야당 당 정치인에 대한 위법한 검찰권 남용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헌법과 검찰청법에서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 헌법 제27조 제1항 위반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 진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피소추자는 야당 정치인인 한명숙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라는 범죄행위를 통해 당시 피고인 한명숙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바, 이는 헌법 제27조 위반이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와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와 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어느 공무원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피소추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담당 검사로서, 피의자 한명숙을 조사함에 있어 객관의무를 다하며 실체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재소자들의 위증을 강요, 회유하고 이를 재판에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어지럽혔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준수해야 할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태는 관련 법률조항을 직접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수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 즉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 형법 제152조 모해위증 교사죄

형법 제152조는 제1항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으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당시 야당 정치인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형사처벌을 목

적으로 한만호의 번복된 진술을 거짓으로 몰고 가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한만호 주변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연습시켰고, 이들이 재판에서 실제로 허위의 증언을 한바, 피소추자는 명백히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3. 탄핵의 필요성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배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절차이다.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탄핵심판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형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의 관행상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일반공무원들이라면 파면될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에도 검사와 같은 고위공직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피소추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은 피소추자의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피소추자를 오히려 영전시키는 등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처사를 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경우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탄핵소추제도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라 할 것이다.

가.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검찰청법 제4조, 형법 제152조 등을 위반하였다.

나. 직무집행 관련성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 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피소추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1) 피소추자의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로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역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위반 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범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제도가 탄핵소추대상인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대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탄핵사유인 위헌·위법 행위 그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공직의 특성, 즉 해당 공직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임의 정도, 임기와 신분보장의 정도,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백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법익 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헌법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추궁이 곤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헌법위반을 방지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핵심적 기능이라는 점 또한 파면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2) 피소추자 파면의 필요성

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엄중하다.

피소추자의 헌법과 형법 등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엄중하고 심각하다.

피소추자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 특히 검사의 존재 이유인 국가형벌권 행사의 근간이 되는 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수사 및 공소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자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객관의무가 있으므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그 행위자가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인 검사인 점에서 일반인의 범행보다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고, 실체진실의 규명이라는 검사의 본연의 역할을 일탈하고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한 국기문란 범죄로서 법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피소추자의 위법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검사의 형사절차 상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헌법 질서 및 국가의 적법한 가동원리를 신뢰해온 많은 국민에게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바, 이는 피소추자에 대한 과면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과면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요성’과 ‘과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에서 객관적인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검사인 피소추자가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헌법질서와 현행 형법 등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과면으로 인한 직무공백이 미치는 효과에 비해 과면의 정당성이 월등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피소추자의 위법행위는 검사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다.

나) 소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고위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7조와 제27조 등의 헌법규범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대함에 비해 피소추자를 파면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공백은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는 피소추자 파면을 통해 헌법질서 수호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 및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형법 제152조 등을 위반했다.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로서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피소추자가 직무집행을 하면서 했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헌법질서의 심각한 침해가 있었고 피소추자의 행위로 인해 국민들은 검찰 시스템 및 사법 시스템 대한 심각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 ① 2021. 2. 2. 뉴스타파 <한명숙 사건, 검사실 '증언 연습' 확인됐다>
- ② 상동 기사 내용 중 <대검찰청 감찰부 작성 한모씨에 대한 문답서>